

과징금의 산정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사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.
- 다. 나목의 사업정지기간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(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나목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(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합계를 말하며, 일부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.
- 마. 연간 총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.
- 바.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의 부과기준

연간 매출액	1일당 과징금 금액
150억원 이하	60만원
150억원 초과 ~ 300억원 이하	80만원
300억원 초과 ~ 450억원 이하	100만원
450억원 초과 ~ 600억원 이하	120만원
600억원 초과	140만원